

인권경영

들여다보기

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이나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일으키는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Part 1

‘기업과 인권’과 인권경영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UNGC 제1원칙

글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이자 국제기준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첫 번째 원칙은 기업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기업의 전방위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임직원, 소비자, 사업 파트너 등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는 별개로 기업은 비즈니스 지역, 규모, 산업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법·제도화는 매우 강화되는 추세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Human Rights, UNGPs)이 국제사회의 기업 인권 존중 담론의 핵심으로 대두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한 OECD는 지난해 인권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 세계 국가들 역시 기업 인권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해 나가고 있다. 미국, EU, 영국, 호주 등의 현대판 노예제법과 관련해 인권 실사 및 공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52개국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이 기업과 인권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인권 이슈를 반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및 기업 평판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기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법적, 경제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 역시 높아지면서, 이를 간과하고 이슈가 발생해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 역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인권존중을 내재화하고, 경영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미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많은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OECD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 주요 지침과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의 인권 내재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 요소들이 정당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 실사를 통한

시스템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점검과 공개는 최근 제정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법적 요구의 핵심이다.

또한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 내 원자재 조달, 협력사 관리, 공정거래, 지역사회관계, 제품·서비스 유통, 폐기물 이르기까지 제품서비스의 가치사슬 전반이 인권 경영의 대상이다. 미국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상장기업 및 공급사가 콩고와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분쟁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룸, 금)을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 분쟁 광물은 일상생활에 쓰는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부품의 주요 원재료이며, 채취 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전쟁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2018년 IBM,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 글로벌, LG화학 등 5개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착한 코발트’ 공급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위·변조가 힘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채굴, 정련, 배터리 제조 같은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코카콜라도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및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노동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있었다.

글로벌 소비자 기업 유니레버도 인권경영을 기업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유니레버는 ‘지속가능한 삶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USLP)’을 발표한 후, 근로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유니레버 인권정책 성명’과 ‘책임 소싱 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을 도입했으며, 관련 이행 상황을 매년 인권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줄이는 ‘Do no harm’ 접근에서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Do good’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만여 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2%의 기업이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17%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기업의 90%가 인권경영이 기업의 이윤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은 운영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협력사에도 인권경영을 적용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도 인권요소를 고려하는 추세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인권경영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으로 바라보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사후 문제 해결이 아닌 예방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권친화적인 기업 경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고위경영진의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표명 및 정책과 지침 마련을 통한 실질적 이행 토대와 문화 형성

인권영향평가

기업 활동과 관련 실제적, 잠재적 인권리스크 요소 파악 및 경영활동의 평가, 분석을 통한 인권경영시스템 수립을 위한 구체적 사안 도출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내부 정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과정. 자원 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의 시스템에 내재화

모니터링 및 공시

기업의 실제 인권 정책, 시스템의 이행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과정, 정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공개 필요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인권침해 당사자가 다양한 구제책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고충처리 메커니즘 마련 및 효율적 운영지원 필요

Part 2

기업을 둘러싼 인권 리스크,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할 것인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기업 중심의 인권 침해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OECD 가이드라인’, 그리고 ‘UN 글로벌 콤팩트’ 등을 통해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특히 UN이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을 발표한 이후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지도원칙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표준적 국제규범으로 정착됐다. 영국 등 10개국이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고 미국 등 19개국이 현재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를 발표했으며 법무부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기준 및 구체적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ILO(국제노동기구)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국가는 적극적인 고용 축진 정책을 추진하고, 개도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고용기회와 고용수준 확대에 노력할 것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권장.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재, 권리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 홍보 · 교육 실시 등



UN 글로벌 콤팩트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보호·지지 및 존중할 것,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



UN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

국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총족할 기본적 의무를 가짐,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권리 및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국내 제도화 현황

2016. 9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산업발전법」개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기한 명시

201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조문 신설

참고 자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대한민국정부

한국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기업과 인권'

지난해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18~2022)에는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 구제 정책목표를 둔 '기업과 인권' 항목이 신설됐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공식적인 의제로 다룬 정부 보고서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의 실천 계획이 담겼다. 법무부는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과제는 노동권·적절한 생활에 관한 권리 등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정책의 특수성과 최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과제들을 이하의 기업과 인권 분야로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

I 인권 경영의 제도화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위해 기업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를 표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과 인권에 대한 홍보 추진
	② 지속가능경영 조합시책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및 포상평가 기준에 '인권존중·차별금지', '일·가정 양립' 등의 내용을 반영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방안 포함
	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사업법」상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 신설에 따른 제도 정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침의 적극 적용
	④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생활 밀접 분야 제품안전 확보
	⑤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기관 관리직, 인사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지원
	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지 설명회 및 진출 예정기업 국내 설명회 개최 진출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및 제공
	II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습기실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8.9.)에 따라 적극적인 구제 추진
III ① 가습기 실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실효성 재고	① 가습기 실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습기실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8.9.)에 따라 적극적인 구제 추진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정부합동, '17.6.29) 운영으로 리콜 활성화 및 회수율 제고 리콜 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먹는샘물, 화장품 등으로의 리콜품목 위험성 등급 분류 확대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민품질차 개선
	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P관련 OECD 동료평가를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오랜 운영경험 벤치마킹 NCP운영 개선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Part 3

우리 기업(기관)은 얼마나 인권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단계

참고 자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2018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2-1 기관(기업)운영	1 인권경영(사업) 실행	1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2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2 구제절차 수립
3 기관(기업) 내 각 부서 확산	2-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3 구제절차 시행
4 기관(기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4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슈	세부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input type="checkbox"/>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남녀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input type="checkbox"/>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단체교섭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저우 금지,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input type="checkbox"/>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input type="checkbox"/>				
5 아동 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input type="checkbox"/>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input type="checkbox"/>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및 보호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input type="checkbox"/>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환경 정보의 공개, 비상계획 수립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input type="checkbox"/>				
10 소비자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제품 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input type="checkbox"/>				